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난임휴직급여 신설 〉

■ 송옥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1210호)

2024. 9.

환 경 노 동 위 원 회

전문위원 손을춘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3
1. 난임휴직급여 신설	3

I. 제안경위

2024년 7월 1일 송옥주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4년 7월 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법률혼 및 사실혼 상태 여성의 17.2%가, 35세 이상 기혼여성의 33.1%가 난임을 경험하였음. 초혼 연령의 증가 추세에 따라 배우자가 있는 여성 근로자의 난임 경험비율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그러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 시술을 위해 매우 짧은 기간(연간 3일) 만을 난임휴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고, 현행법에서는 다른 휴가·휴직과는 달리 난임치료휴가에 대해서는 급여를 지급하고 있지 않음.

이에 근로자에게 난임치료를 위한 3개월 이내의 휴직을 별도로 부여하는 한편, 난임휴직을 실시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30일 이내의 난임휴직급여를 보장하여 난임으로 고통받는 근로자의 노동권 및 행복추구권을 보호하고 저출생 현상 타개에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70조의2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송옥주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1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Ⅲ. 검토의견

1. 난임휴직급여 신설

가. 개정안의 요지

개정안은 함께 발의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1211호)에 따른 난임휴직 도입에 맞추어, 고용보험기금에서 난임휴직급여를 지급(난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피보험자 중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 하고, 난임휴직 급여의 급여액, 급여의 신청 및 지급은 육아휴직 급여를 준용하려는 것임(안 제70조의2 신설 등).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6조(보험료) ① (생략)	제6조(보험료) ① (현행과 같음)
②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3조 제1항제1호에 따라 징수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보험료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는 각각 그 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한다. 다만, 실업급여의 보험료는 제55조의2제1항에 따른 국민연금 보험료의 지원, 제70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 제73조의2 제1항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지급, 제75조·제76	② ----- ----- ----- ----- ----- ----- ----- -----제70조 의2에 따른 난임휴직급여의 지급, 제73조의2제1항-----

조의2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및 제77조의4·제77조의9에 따른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에 드는 비용에 충당할 수 있다.

③ (생략)

<신설>

-----.

③ (현행과 같음)

제70조의2(난임휴직급여)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4에 따른 난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피보험자 중 난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인 피보험자에게 난임휴직급여를 지급한다.

동부장관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4에 따른 난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피보험자 중 난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인 피보험자에게 난임휴직급여를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난임휴직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난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난임휴직이 끝난 날 이후 3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난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없었던 사람은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파견

제74조(준용) ①·② (생략)
<신설>

제80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1. ~ 2의2. (생략)
3.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지급

근로자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4에 따른 난임휴직 기간 중 근로계약기간이 끝나는 경우 근로계약 종료일부터 해당 난임휴직 종료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난임휴직급여에 상당하는 금액 전부를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에게 지급한다. 이 경우 난임휴직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및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74조(준용)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난임휴직급여에 관하여는 제62조 및 제70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와 제71조 및 제7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2조 중 “구직급여”는 “난임휴직급여”로, 제70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와 제71조 및 제73조 중 “육아휴직 급여”는 “난임휴직급여”로, “육아휴직 기간”은 “난임휴직 기간”으로, “육아휴직”은 “난임휴직”으로 본다.

제80조(기금의 용도) ① -----

 ---.

1. ~ 2의2. (현행과 같음)
3. 육아휴직 급여, 난임휴직급여 및-----

4. ~ 7. (생략)

②·③ (생략)

제87조(심사와 재심사) ① 제17조에 따른 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에 대한 확인, 제4장의 규정에 따른 실업급여 및 제5장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와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에 관한 처분[이하 “원처분(原處分)등”이라 한다]에 이의가 있는 자는 제89조에 따른 심사판에게 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그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제99조에 따른 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③ (생략)

제90조(심사의 청구 등) ① 제87조 제1항에 따른 심사를 청구하는 경우 제17조에 따른 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 확인에 대한 심사의 청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근로복지공단”이라 한다)을, 제4장에 따른 실업급여 및 제5장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와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에 관한 처분에 대한 심사의 청구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을 거쳐 심사판에게 하여야 한다.

4. ~ 7.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제87조(심사와 재심사) ① -----

-----육아
휴직 급여·난임휴직급여·출산
전후휴가 급여등-----

-----.

②·③ (현행과 같음)

제90조(심사의 청구 등) ① -----

-----육아휴직 급여·난임휴직
급여·출산전후휴가 급여등-----

-----.

② (생 략) 제107조(소멸시효)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1. ~ 3. (생 략) 4. 제5장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u>육아기</u> 근로시간 단축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을 반환받을 권리	② (현행과 같음) 제107조(소멸시효) ① ----- ----- -----. 1. ~ 3. (현행과 같음) 4. ----- <u>난임휴직급여, 육아기</u>----- -----
② (생 략)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주민등록정보, 가족관계등록사항, 군복무에 관한 자료, 토지·건물에 관한 자료, 국민연금·건강보험 등 각종 연금·보험에 관한 자료, 출입국 정보 등을 관계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 9. (생 략) 10. 제73조(<u>제74조제2항</u> 및 제7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등의 지급 제한 11.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① --- ----- ----- ----- ----- ----- -----. 1. ~ 9. (현행과 같음) 10. -----<u>제74조제2항·제3항</u> 및 ----- ----- ----- 11. (현행과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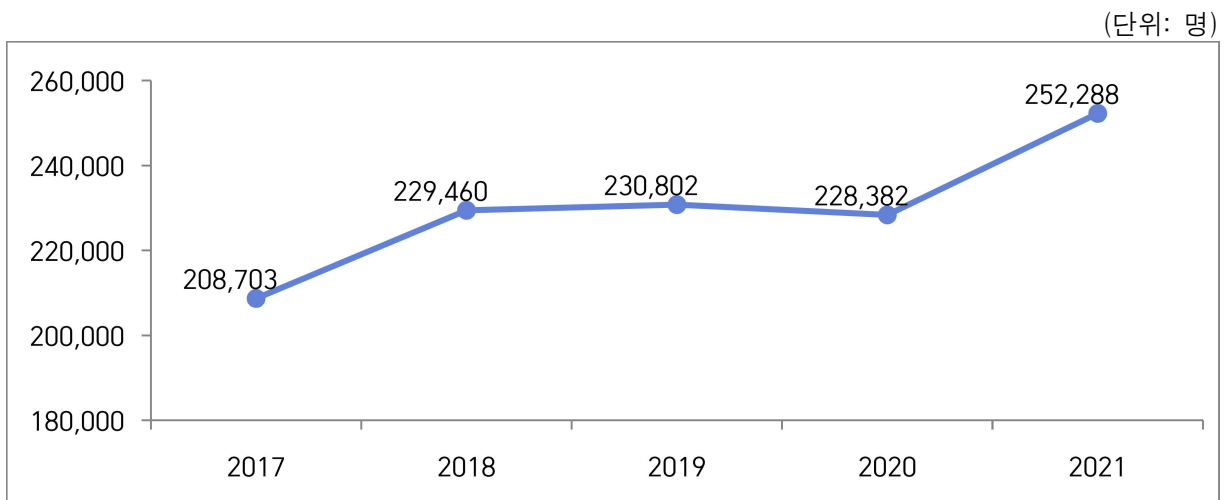
②・③ (생략) 제112조(포상금의 지급)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위탁 및 <u>실업급여・육아휴직 급여 또는 출산전후휴가 급여</u>등의 지원과 관련한 부정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생략) 제116조(벌칙) ① 사업주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음 각 호에 따른 지원금 또는 급여를 받은 자와 공모한 사업주는 각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2. (생략) 3. 제5장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u>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u>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4. (생략) ②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112조(포상금의 지급) ① ----- ----- ----- -----<u>실업급여・육아휴직 급여・난임휴직급여 또는</u>----- ----- ----- ----- --. ② (현행과 같음) 제116조(벌칙) ① ----- ----- ----- ----- ----- ----- ---. 1.・2. (현행과 같음) 3. ----- <u>난임휴직급여, 육아기</u>----- ----- ----- 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	--

나. 검토의견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난임치료휴가 기간은 연간 3일 이내이며, 사용 가능한 난임치료휴가 3일 중 최초 1일만을 유급으로 하고, 이를 사업주가 부담하고 있음.¹⁾

그런데 초혼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난임 환자도 증가하는 추세로, 2021년 난임 환자 수는 252,288명으로 2017년 208,703명 대비 2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근로자가 난임치료 집중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그림] 2017~2021년 난임 환자 수



※ 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 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

- 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8조의3(난임치료휴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이하 “난임치료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간 3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최초 1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 ② 사업주는 난임치료휴가를 이유로 해고, 징계 등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난임치료휴가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에 개정안은 함께 발의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른 난임휴직 도입(최대 3개월 사용, 최초 30일 유급)에 맞추어 고용보험기금에서 난임휴직급여를 지급(지급대상: 난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사람 중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피보험자)하려는 것으로, 근로자의 난임치료휴직 사용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여 모성보호제도를 강화한다는 점에서 입법의 의의가 있음.

다만, 개정안에 따라 난임휴직급여를 도입하면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나,²⁾ 고용보험기금의 적립금이 2018~2022년 동안 감소하는 추세이므로, 재원확보 방안을 고려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봄.

[표] 고용보험기금 재정현황

(근로자 계정, 단위: 억원)

구 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계	수입	107,599	118,508	198,171	200,074	187,621
	지출	115,723	139,452	204,566	210,577	180,647
	수지	△8,124	△20,944	△6,395	△10,503	6,974
	적립금	94,087	73,101	66,466	56,487	63,379
실업급여 계정	수입	76,407	84,756	136,287	148,356	135,897
	지출	79,157	98,558	138,860	144,242	141,454
	수지	△2,750	△13,802	△2,573	4,114	△5,557
	적립금	38,886	31,726	27,800	43,224	37,604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계정	수입	31,193	33,752	61,884	51,718	51,725
	지출	36,566	40,894	65,706	66,335	39,193
	수지	△5,374	△7,142	△3,822	△14,617	12,531
	적립금	55,201	41,374	38,666	13,263	25,775

※ 자료: 고용노동부

2) 국회예산정책처는 장래에 발생할 실제 난임휴직 사용자를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렵고, 지원단가 및 실제 사용기간 예측이 불가능하여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기 어렵다고 봄.

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는 국가의 난임휴직급여에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하므로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고, 난임휴직 제도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므로 이를 전제로 한 국가의 난임휴직급여 지급에 대해서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539